

울산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19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1975 판결

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 2022. 3. 17 선고 2021가소11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2. 11. 1.

판결 선고 2023. 1. 17.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2. 3. 17. 선고 2021가소1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666원, 선정자 C에게 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25. 1) 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333,300원,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에게 1,333,300원²⁾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³⁾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633원, 선정자에게 516,6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 피고 및 D(이하 위 4명을 가리켜 '원고 등 4인'이라 한다)는 양산시 E마을 주민들로서, 125만 원씩 지출하여 마련한 500만 원을 E마을 이장 F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울산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9. 6. 19. F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등 4인은 2019. 6. 25.경 위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법무법인 G로부터 피고의 딸 H의 계좌로 환불받았다(이하 환불받은 500만 원을 '이 사건 환불금'이라 한다).

다. D는 2019. 6. 27. 피고에게 'F에 대한 법적 문제를 포기하니 자신이 지급한 125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7. 24. 피고를 상대로 위 125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가소5097). 위 사건에서 '피고가 2019. 12. 12.까지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9. 11. 28.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9. 12. 12. D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7. 9.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9. 10. 2.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초재481).

마. 원고, 선정자, 피고(이하 위 3명을 가리켜 '원고 등 3인'이라 한다)를 비롯한 E마을 주민들 약 120명은 I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에 따른 피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J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2019. 7. 11.경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위 E마을 주민들 약 120명과 J 아파트 주민 33명은 2019. 9.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특혜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환불금 중 선정자에게 2019. 9. 26. 90만 원, 2019. 12. 17. 4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환불금 중 D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400만 원에서 원고 등 3인이 지급한 돈 중 원고 및

선정자가 지급한 각 돈의 비율(1/3로서, 이하 '원고 및 선정자의 각 지분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돈 1,333,300원(= 400만 원 × 1/3, 10원 단위 이하 버림)씩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환불금 중 D에게 반환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I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법적대응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400만 원에서 ① 재정신청서 대서비용으로 200,000원, ② I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대서비용으로 300,000원⁴⁾, ③ 기자회견을 위한 피켓(90,000원), 현수막(125,000원) 제작비용으로 215,000원(= 90,000원 + 125,000원), ④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사비용으로 633,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⑤ 원고 등 3인이 합의하여 상조가입비로 135만 원(= 45만 원 × 3명)을 지출하였으므로, 남은 돈은 1,302,000원(= 4,0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215,000원 - 1,350,000원)이다. 이를 원고 및 선정자의 각 지분비율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은 각 434,000원(= 1,302,000원 × 1/3)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선정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⁵⁾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가 제1항의 바.와 같이 송금한 합계 135만 원도 원고 등 3인이 합의에 따라 K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불금 중 D에게 반환한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에서 위 135만 원을 공제한 265만 원 중 원고 및 선정자의 각 지분비율(1/3)에 해당하는 돈 883,333원(= 265만 원 × 1/3, 원 미만 버림)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의 공제항변 중 제2항의 나. ⑤부분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883,333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816,667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3.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각 66,666원에 관하여는 위 2020.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식비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 9,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등 3인이 L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이 사건 환불금에서 지급하기로 원고 등 3인이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나. 재정신청서 대서비용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을 제12호증의 2와 같은 증거이다),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7. 9.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사실, H이 2019. 9. 25. 법무법인 G의 사무장 M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와 함께 재정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3인 사이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①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시점보다 두 달이 지나서 2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위 20만 원 송금일이 같은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환불금을 환불받은 다음인 것에 비추어, 위 20만 원 송금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적어도 F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위 변호사 사무소와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M에게 송금한 20만 원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 대서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대서비용 및 기자회견 피켓·현수막 제작 비용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마을 주민들 약 120명과

J 아파트 주민 33명은 2019. 9.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2019. 7.경 기자회견 피켓 제작비용으로 125,000원,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90,000원이 소요된 사실, H이 2020. 4. 20. 법무법인 G의 사무장 M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시점보다 무려 여섯 달이 지나서 30만 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이 진정서 대서비용으로 송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진정서 대서비용으로 지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환불금은 당초 F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마련한 돈으로서, 이는 E마을 주민들이 I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I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일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원고 등 3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기보다는 E마을 주민들과 J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환불금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30만 원 및 215,000원을 이 사건 환불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영

판사이주황

판사박세정

별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이 아닌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인용금액(= 1,766,666원)이 당초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금액(= 2,266,666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각주 3 참조)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2) 원고는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에게" 2,666,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는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 금액을 나누어 기재한 점,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에게 각자 자신이 출연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는 부대항소취지와 관련하여 "당초 지급명령신청서 기재한 원금"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뺀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2022. 9. 20.자 변론조서 참조), 선정당사자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행함이 상당하다. 부대항소취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는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금액을 수정하는 외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2022. 8. 11.자 항소이유서에 재정신청서 대서비용으로 3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대서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을 제8(을 제12호증의 2와 동일한 증거이다)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는 재정신청서 대서비용 2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대서비용 3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5) 제1심은 선정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선정자는 소송수행권만 있을 뿐 원고로서 당사자이며, 당사자신문에는 증인신문의 신문방식규정 등 여러 규정들이 준용(민사소송법 제373조)되고 있으므로, 비록 선정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의 형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본인신문으로 본다.

6) 제2항의 나. ⑤를 제외한 부분이다.